[별지 제41호의2서식] <개정 2019. 10. 7.> (앞 쪽)

준공검사신청서

처리기간
30 일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업체명		전화번호	
	주소 또는 소재지			

신청내용

조성사업 명칭		조성사업 위치	
조성사업 완료면적	㎡	조성기간	

「관광진흥법」 제58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수수료
없음

<구비서류>

1. 준공설계도서(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)
2. 「지적법」에 따라 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
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(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)
4. 「공유수면매립법」 제26조,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(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5. 환지계획서 및 신·구 지적대조도(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6.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·처분 계획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 (재활용품)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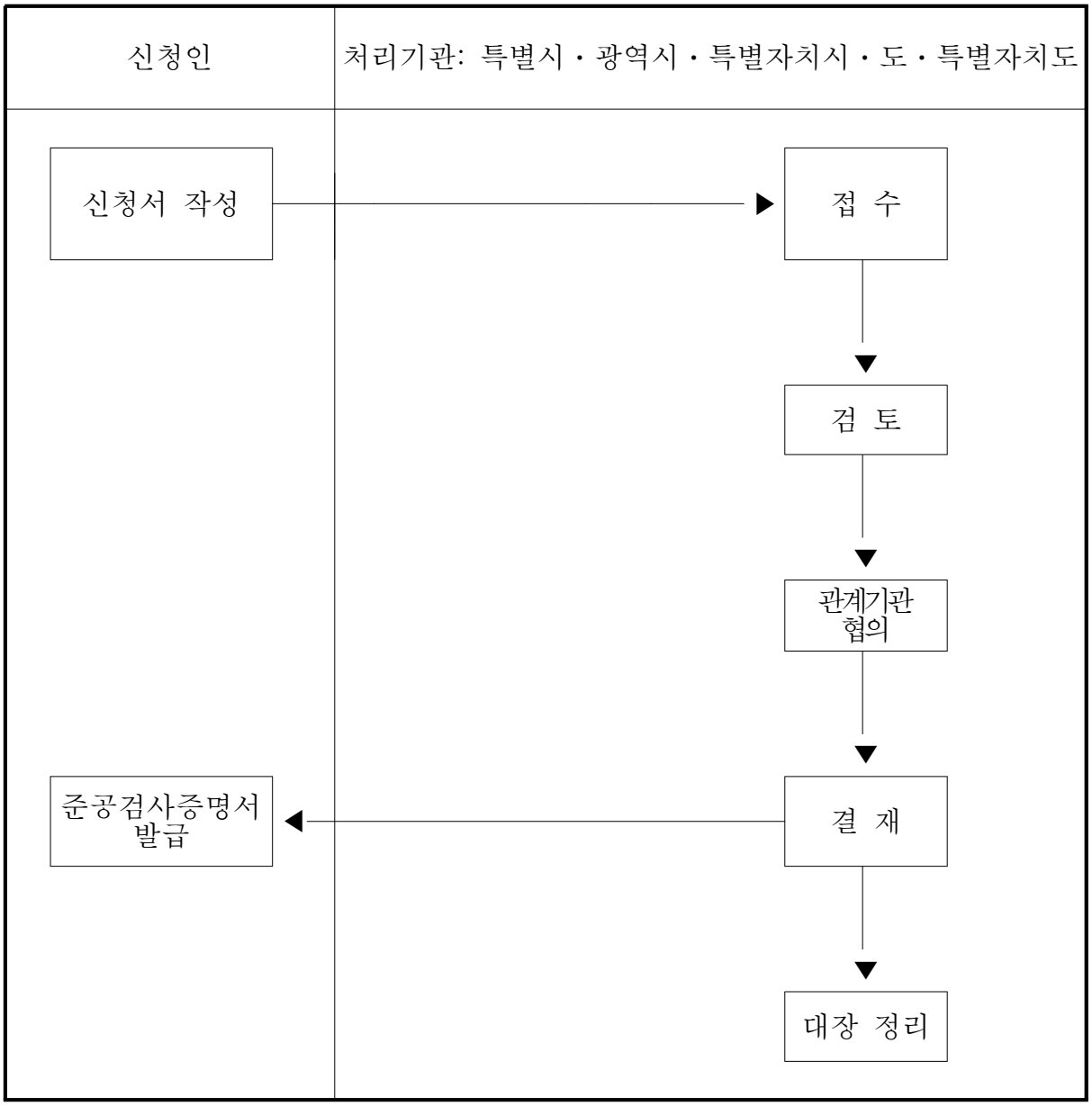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